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라. 농지전용의 규제 완화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법적 형평성,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농지전용의 규제완화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대기 및 수질오염등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을 감안, 지목과 용도지역의 변경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마. 공시지가의 수정보완

상암동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은 건설부의 표준지가격이 조정되지 않는한 지가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매년 1월 1일 고지지를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므로, 차기년도 관할 구청에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한 지가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없음

6. 토지요지

김중열:본회위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외의견:별첨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한 의견서

1. 녹지지구해제 및 부분준공업지역 보전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기를 요청함.

2. 농지 전용 규제 완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서울특별시 및 검찰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3. 난지도 쓰레기장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후의 정화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화관리 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4. 부당책정된 공시지가 수정보완

-매년 실시되는 공시지가 조사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청원인들 지역의 공시지를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청원 심사보고서

1992. 7. 2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마포구 노고산동 56-16
성명:유정호 외 241인

나. 소개의원:이종만의원

다. 접수일자:'92. 4. 1

라. 회부일자:'92. 4. 20

마.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청원요지

마포구 노고산동 49번지, 54번지 및 56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망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이종만 의원)

현장답사결과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망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청원건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청원으로서, 상업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구조와 기능상, 상업 및 업무기능의 직접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상업지역이 계속 확산될 경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게 되고, 교통문제·지가양등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상업지역 지정은 도시계획법상 개별적 처리는 어려우리라 사료됨. 그러나 청원지역은 신촌 부도심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예정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서울시 및 건설부등에 건의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가. 질의요지(전병만 위원)

마포구의 상업지역은 전체의 몇%이며, 향후 상업지역을 늘릴계획은 없는지?

나.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마포구 전체면적에 대한 상업지역은 1.1%이며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늘릴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확실한 형편은 아님.

6. 토론요지

권오범위원: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 의견:별첨

노고산등 56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에 건의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요청함.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2. 7.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992년 7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2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 7. 15) 질의토론

제3차위원회('92. 7. 18)수정안 제안설명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정태연 총무국장)

가. 제출이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첫째, 추경편성의 요건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되었던 사업이나,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대부분 부응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향후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예산은 현재 취득승인요청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향후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셋째, 이번 추경예산안중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7.4%인 6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92회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의 이월등으로 효율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문태 위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편성한 이유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는 새마을연합회, 마을금고등은 기반영되었는데 여성단체는 편성이 안되어 반영하였으며, 그